

“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.”



대 법 원

우 137-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(서초3동 967) /전화(02)3480-1349 /전송(02)3476-8048/ds8192@scourt.go.kr
사법정책실 사법정책제4심의관 정준원 담당자 임동순

문서번호 사법정책제4심의관(민사) 2058

시행일자 2006. 06. 30
2006. 6.

수 신 김명호

156- 834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- 1504

제 목 민원에 대한 회신

1. 안녕하십니까? 2006. 6. 12.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2. 위 민원의 요지는, ① 대법원 77다300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해석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판결한 것에 대한 해명 요구, ② 판례검색 페이지에 대법원 77다300 사건 판결에 명시된 판시사항, 판결요지, 참조조문이 삭제된 이유 해명 요구, ③ 대법원 2003다52647 판결 등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.
3. 위 질의사항에 대한 별첨 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



사법정책심의관 전결

민원회신

사법정책실

◎ 질의 1.

- 대법원 77다300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해석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판결한 것에 대한 해명 요구

▶ 답변

- 대법원 77다300 사건은,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판단되어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으로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사안이 아님(법원조직법 제7조 참조)

◎ 질의 2.

- 판례검색 페이지(<http://glaw.scourt.go.kr>)에 대법원 77다300 사건 판결에 명시된 판시사항, 판결요지, 참조조문이 삭제된 이유 해명 요구

▶ 답변

- 판례검색 페이지(<http://glaw.scourt.go.kr>)에 대법원 77다300 사건의 판례에 대한 판시사항, 판결요지, 참조조문이 등이 게재되어 있음

◎ 질의3.

- 대법원 2003다52647 판결 등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3항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명 요구

▶ 답변

- 대법원 2003다52647 사건의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적용 할 것을 이유로 원심으로 파기환송한 것임